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경기도지사

I 추진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II 추진개요

- (지정규모) 제한없음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 (지원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Ⅲ 신청자격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관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급여이체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요약) »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을 확인하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정관 등
-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수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상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참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 (관참은 일자리)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등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지원 수혜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과 '일자리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준용
-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불인정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불인정
 -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 취약계층의 범위는 [참고 5] 취약계층의 범위' 및 [참고 6]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름
 ※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참고 7]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따름
 ※ 사회적 목적 유형별 세부사항은 [참고 8]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사회적목적 요건 상세' 참고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 영업활동 수행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판단기준 »

- ▶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리법인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정 종교조직 기부금이나 선교 사업을 위한 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 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10차시로 구성)’ 수료증 제출

○ (지정제한) 아래의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IV 주요 심사내용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심사항목 | 배점 | 주요 내용 |
|-----------|----|---|
| 사회적가치 추구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
| 사업내용의 우수성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구체성(제품·서비스 개념 및 내용 명확화) •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운영 프로세스, 자원확보 방안 등) •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시장분석, 벤치마킹, 타사와 비교를 통한 경쟁력 분석 등) |
| 사업역량 |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 |
| 사업목표 |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가치 창출 목표(연차별 매출 계획 및 규모 등 경제적 가치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수익금의 사회적목적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V 지정절차

| | | | | | |
|-----------|---------------|--------------------|------------|--------------|---------|
| 신청·접수 |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 현장실사 및 검토 | 노동관계법령 검토 | 심사 | 선정결과 공고 |
| 기업→시군 | 기업↔시군 | 시군, 지원기관 고용노동관서 | 전문용역기관 | 道 심사위원회 | 道 |
| 8.3~8.16. | 8.17~8.24. | 8.29~9.20. | 8.29~9.20. | 10.17~10.19. | 10. 말 |

○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현장실사·심사 방식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시스템 내 회원가입(아이디·패스워드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원클릭서비스 제출동의)
 - 지정공모 선택 → 지정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증빙자료 포함,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서류검토 및 현장실시 시 서류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의 보완 »

- ▶ (보완요구) 기초자치단체장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 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신청서의 반려)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 ▶ (부적격 통보)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부적격 사례)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

VI 신청서류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통합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첨부시 ②~⑩별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합본할 것

| 제출서류 항목 | 서식(비고) |
|---|--|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통합정보시스템 직접 작성) | <별지 제1호서식> |
|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부,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
|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지역사회공헌형(기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지역취약계층 확인서류) | <별지 제2호의2 ~ 제2호의6서식> 및 구비서류 |
| ⑤ 정관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상법 상 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임원 및 근로자 전원) | <별지 제6호서식> |
| ⑦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제출 서류에 한하여 노동관계법령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조건에 해당함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토가 불가한 경우 위법으로 간주함 ※ ⑦ ~ ⑦-29 까지 합본,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시스템 등록 ※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포함 제출 | <별지 제2호8서식> |
| ⑦-1 유급근로자 명부(전체 근로자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에서의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는 바,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근로자를 작성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 <별지 제2호의7서식> |
| ⑦-2 근로계약서 (근로자수 15명 미만 전 직원) ※ 근로자 수 15명 이상인 경우,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용직 등 *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
| ⑦-3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근로자수 15명 미만 전 직원) ※ 근로자 수 15명 이상인 경우,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용직 등 *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

| 제출서류 항목 | | 서식(비고) |
|---------|--|---|
| ⑦-4 | 임금대장(최근 3개월 / '23.5.~'23.7.) | |
| ⑦-5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23.5.~'23.7.) (근로자수 15명 미만 전 직원) * 근로자 수 15명 이상인 경우, 근로조건별* 샘플 첨부 (5명 이상) |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시급제, 일용직 등 *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등 |
| ⑦-6 | 휴가대장('22년, '23년) * 연차축진제도 운영 시 관련 자료 제출 필수 | 5인 이상 |
| ⑦-7 | 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22년, '23년) | 미사용 수당 지급 시 |
| ⑦-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 ('22년, '23년)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 |
| ⑦-9 |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4대보험 완납증명서 |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 ⑦-10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서류 ('22년, '23년)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 5인 이상 사업장 중 대상 사업장 |
| ⑦-11 |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취업규칙 신고필증 포함) | 10인 이상 |
| ⑦-12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접수증 포함) | 30인 이상 |
| ⑦-13 | 노사협의회 회의록 ('22년, '23년) | 30인 이상 |
| ⑦-14 | 고충처리대장 ('22년, '23년) | 30인 이상 |
| ⑦-15 | 고충처리위원명단 또는 위촉장 | 30인 이상 |
| ⑦-16 | 출퇴근 기록부 및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내역 (최근 3개월 / '23.5.~'23.7.) |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
| ⑦-17 | 휴직자 관리대장 ('22년, '23년) | 휴직자가 있는 경우 |
| ⑦-18 | 해고통지서 ('22년, '23년) | 해고자가 있는 경우 |
| ⑦-19 | 해고예고수당 지급 내역 ('22년, '23년)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
| ⑦-20 | 퇴직금 산정 내역서 ('22년, '23년) | 퇴직자가 있는 경우 |
| ⑦-21 | 근로자파견허가증 | 파견업 운영 시 |
| ⑦-22 |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 파견근로자 사용 시 |
| ⑦-23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경비직 등)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 시 |
| ⑦-24 | 기숙사 규칙(근로자 동의서 포함) | 기숙사가 있는 경우 |
| ⑦-25 |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 15세 미만자 사용 시 |
| ⑦-26 | 18세 미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 | 18세 미만자 사용 시 |
| ⑦-27 |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
| ⑦-28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22년, '23년) - (확인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 로그인 →증명원 신청/발급→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
| ⑦-29 | 이외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기타 관련 서류 | 대상 사업장 |
| ⑧ | E-러닝 교육이수증 확인(㉑, ㉒ 중 택1) - ㉑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수료증(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㉒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 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
| ⑨ | 기타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
| ⑩ |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고유번호증 불인정),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납세증명)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VII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 8. 3.(목) ~ 8. 16.(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 ▶ 상담 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평일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불입서류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예시1)등기부등본+대표자 이력서, (예시2)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 ▶ 불입서류는 1 파일당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지정결과 통보)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게시

VIII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경기도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 말까지)
 -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지정취소 의뢰)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 정기점검(1·3분기), 합동점검(2·4분기) 예정
- 지정취소
 -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 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IX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사항임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함

○ 문의처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구분 | 부서 | 연락처 | 구분 | 부서 | 연락처 |
|------|----------|---------------|------|--------|---------------|
| 경기도 | 사회적경제육성과 | 031-8008-3587 | 광명시 | 사회적경제과 | 02-2680-6457 |
| 수원시 | 마을자치과 | 031-228-2274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5182-1453 |
| 용인시 | 민생경제과 | 031-324-2206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031-390-0940 |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723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6921 |
| 성남시 | 지역경제과 | 031-729-3663 | 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082-6091 |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 031-5189-3107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97 |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3 | 구리시 | 산업지원과 | 031-550-2397 |
| 남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031-590-8906 |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 031-678-5454 |
| 안산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481-2609 | 의왕시 | 자치행정과 | 031-345-2134 |
| 평택시 | 미래전략과 | 031-8024-3525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4428 |
| 안양시 | 고용노동과 | 031-8045-2336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637 |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031-310-6052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2287 |
| 김포시 | 시민협치담당관 | 031-980-2746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8 |
| 파주시 | 도시재생과 | 031-940-5073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462 |
| 의정부시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2 | 가평군 | 일자리정책과 | 031-580-2957 |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760-2671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29-2286 |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
| 수원시 | 280-6371 | 의정부시 | 850-5842~3 |
| 용인시 | 337-2528 | 광명시 | 02-2680-6457 |
| 고양시 | 960-7875 | 하남시 | 796-7904 |
| 성남시 | 756-4957 | 군포시 | 462-0306 |
| 화성시 | 352-9400 | 오산시 | 8036-6922 |
| 부천시 | 032-625-2991 | 양주시 | 865-1605 |
| 남양주시 | 590-8906 | 구리시 | 550-2397 |
| 안산시 | 481-8942 | 안성시 | 678-0786 |
| 평택시 | 657-6051 | 포천시 | 538-4428 |
| 안양시 | 8045-2337 | 양평군 | 770-2639 |
| 시흥시 | 365-5412~8 | 여주시 | 885-5703~4 |
| 김포시 | 980-2748 | 과천시 | 02-3677-2464 |
| 파주시 | 940-5087 |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구내번호 1) | 고용노동부 지정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seis.or.kr>)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